

의안번호	제 10 / 호
의결년월일	1999. . . (재 회)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1999. 8. 11.
제출자 : 서산시장

1. 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99. 2. 8)으로 근거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관련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분괴성 봉투를 도입·사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도록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변경사항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의 분리·보관시설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설치등 조치명령규정(폐기물관리법 제16조)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의 설치명령 개정(안 제5조).
- 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청결유지의 규정(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신설(99. 2. 8)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명령근거 마련(안 제8조).
- 다.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를 도입·제작사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 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표기(안 제10조)
- 마. 폐기물수수료감면 대상중 해석의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 삭제(안 제17조).

3. 참고 관련자료

- 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결과 :
- 마. 승인·보고·인가 등의 관련서류 : 해당 없음.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시설의 용기 등의 설치관리”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보관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위해의 제거 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를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보호대상자(장애인 포함)”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보관시설 기준”으로 하고, 동표제2호의 제목중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보관시설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 용기등의 설치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 용기의 규격은 시 보유수거장비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는 교통·도시미관·주변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 및 보관방법) ①법제 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수거 장비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p> <p>(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생략).</p> <p>(신설).</p> <p>②~ ⑤(생략).</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 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위 해의 제거 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p> <p>③~⑥(현행 제2항 내지 제5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제질 등) ①~④(생략) (신설)</p>	<p>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제질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생략)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u>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u>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u>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 후 접수</u>하여야 한다</p>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u>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 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u>----- ----- ----- ④시장은 <u>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접수</u>하여야 한다</p>
<p>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1. 생활보호법에 의한 <u>보호대상자(장애인 포함)</u> 2. (생략) 3. (생략)</p>	<p>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보호대상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3]</p> <p>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및 <u>보관시설</u>의 설치기준(제5조관련)</p> <p>1. (생략)</p> <p>2. <u>보관시설 설치기준</u>(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물은 수용인원 기준) (내용 생략)</p> <p>3. (생략)</p>	<p>[별표 3]</p> <p>----- <u>보관시설</u> 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관시설의 기준</u>(-----) (내용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제9조제4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cm) (가로 × 세로)	색	깔
일반용	3 ℓ	22 × 39.5	○ 일반용중 - 매립용 : 반투명색 - 소각용 : 선홍색 - 음식물용 : 투명녹색 ○ 공공용 : 투명청색 ※ 일반용은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구분한다.	
"	5 ℓ	26 × 46.5		
"	10 ℓ	33 × 56.5		
"	20 ℓ	42 × 69.5		
일반용 공공용	50 ℓ	56 × 91.5		
일반용	100 ℓ	71 × 113.5		

- 비고 : 1. 실제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공업진흥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에 의한다.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제9조제3항 관련)

종 류	크 기	바 탕 색	글 씨
1,000원권	가로10cm × 세로15cm	연두색	고딕체검은색
2,000원권		하늘색	"
3,000원권		노란색	"
5,000원권		빨간색	"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제15조관련)

수집·운반·처리비 산정

$$\text{수집·운반·처리원가/톤} \div 2,500 (\text{쓰레기 } 1 \ell \text{ 의 무게를 } 0.4\text{kg}) \times \text{봉투용량} (\ell)$$

당해연도 수집·운반·처리원가 산정기간은 전전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상반기까지로 한다.

연도별 자립도 적용 비율

연도별 용량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 고
적 용 비	30%	50%	70%	90%	100%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용 량 별	일 반 용 봉 투	비 고
5 ℓ	ℓ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 (ℓ) × 당해년도 자립도 + 봉투제작비 + 판매이윤	※ 단 음식물용 및 소각용은 산정 가격의 1/2로 한다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주] : 십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